

해외 자원개발을 위한 네덜란드 자회사의 설립구조

- 이라크 사업을 중심으로 -

오정환 변호사(한국가스공사),
최종일 상무(삼일회계법인)

1. 서론

자원확보의 중요성은 범세계적인 문제이다. 피크이론¹⁾에 의하면 화석에너지의 고갈은 시간의 문제일 뿐 기정사실이라고도 한다. 급등하는 에너지 가격으로 인한 세계경제의 불안도 진정시킬 필요도 있다. 풍력, 지열 등을 이용한 그린에너지가 세계적 유행이 되고 있지만 화석연료²⁾를 대체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요원하고, 화석연료의 중요성은 여전히 늘어만 가고 있고, 향후 50여 년은 그 추세가 바뀔 가능성은 적은 듯하다. 각국은 이에 따라 에너지 확보를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로 삼고 있고, 상당액의 국부를 투자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정부도 위와 같은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상 해외자원개발기본계약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해외자원개발의 추진목표,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기술수준의 향상, 해외자원개발 전문인력의 양성,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정보유통의 원활화,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국제협력, 해외자원개발의 합리적인 조정 및 관리, 기타 해외자원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다.³⁾ 또한 국가의 장기적 과제로서 2030년까지 에너지 자주개발률 35%⁴⁾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정하고 있고, 해외 자원개발에 대해

1) 미국 지구물리학자인 Herbert이 주창한 이론으로, 석유 등의 지하자원의 유한하기 때문에 생산의 정점을 지나 결국 모두 소진될 것이라고 한다. Herbert에 따르면 미대륙의 원유는 1965년과 1970년 사이에 정점을 지나 소진과정을 거친다고 하였고, 세계적으로도 1956년을 기준으로 반세기가 지나면 정점에 이를 것이라고 예견하였다. 한편 이와 관련해 Bently는 세계 재래가스는 2020년을 정점으로 줄어든다고 주장하였다.

2) 화석연료는 땅속에 매장된 식물 등의 유기물질이 수 백만 년에서 최고 6억 5000만 년의 오랜 시간을 거쳐 부패되면서 생기는 연료로서, 탄소원소를 포함한 원유, 가스, 석탄 등을 말한다. Paul Mann, Lisa Gahagan, and Mark B. Gordon, "Tectonic setting of the world's giant oil and gas fields," in Michel T. Halbouty (ed.) Giant Oil and Gas Fields of the Decade, 1990-1999, Tulsa, Okla.: American Association of Petroleum Geologists, p.50.

3)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4조 참조.

4) 2009년 원유가스의 자주개발률은 8.1% 정도에 이르렀는데, 2010년에는 1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고 한다. 에너지저널 <http://www.ej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78>, 2010. 8. 16. 최종방문.

세계 감면, 해외자원개발 투융자금의 제공 등 다양한 형태로 지원하고 있으며, 해외 자원확보를 위한 국제적 외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국가 정책에 발맞춰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등의 공기업이나 SK 에너지, GS 칼텍스 등의 민간 기업도 자원확보를 위해 전면에 나서고 있다.

해외 자원개발 사업을 위해서 많은 것을 고려해야 하는데, 사업이익의 극대화와 사업에 따른 위험성의 최소화가 그 핵심과제라고 할 수 있다. 사업의 핵심과제는 사업의 주체를 어떻게 구조화하느냐와 밀접하게 관련 있는데, 사업주체를 어떤 법적 형태로 구성하고, 어느 국가의 법률을 근거로 설립하는가가 사업의 구조화의 중심이 된다. 그에 따라 해외 자원개발에 따른 사업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얼마나 줄여 사업이익을 어떻게 극대화할 수 있는지가 결정되고, 해외 자원개발 사업의 실패로 인한 피해가 국내 모기업에 미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의 네덜란드 투자 신고 규모는 2009년 기준으로 78건, 17억 7천만 달러(수출입은행 신고기준)을 기록하였고, 현재까지 382건 64억 달러 정도를 투자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투자 구조는 대개가 BV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⁵⁾ 한국은 2001년 기준으로 미국의 38억 9천만 달러와, 캐나다의 15억 600만 달러에 이어 64건 12억 4,500만 달러에 이르러 3위 규모를 기록했다고 한다. 그리고 네덜란드 투자는 외국기업 또는 외국인이 2002년 5월말 기준 93.2%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처럼 한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네덜란드 투자에 관심을 쏟는 이유가 무엇일까?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해외사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사업의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것은 어느 국가의 법률을 근거로 회사를 설립하고 어떤 법적 형태로 할 것인가와 밀접히 관련이 있다고 하였는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많은 외국기업이 해외사업을 위해 네덜란드 법을 근거로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외국 투자의 93.2%가 국제거래 또는 국제금융을 위해 외국인 또는 외국회사가 네덜란드에 세운 회사 때문에 발생하였다는 통계자료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⁶⁾

해외 자원개발의 기회는 개발도상국에 집중돼 있다. 선진국은 자체적으로 자원개발을 할 수 있는 자본과 기술이 있지만, 개발도상국은 해외기업의 자본과 기술의 도움 없이 자원개발을 할 수 없다. 그런데 개발도상국은 법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고 선진국 법제도를 모방하여 정비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 운용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그에 따라 개발도상국의 자원개발 사업에 참여할 때에는 앞서의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어떻게 이를 해결할 것인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개발도상국의 자원개발 사업에 있어 구조화 문제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5) KCCN(Korea Company Community in the Netherlands)가 집계한 자료로서 공식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다음의 english.expportal.or.kr/nation/101017/stamp/101017_5001_14201.pdf를 참조함.

6) 앞의 자료.

IV. 해외 자원개발을 위한 네덜란드 자회사의 설립구조 173

해외 자원개발을 논의할 때, 원유가스의 매장량이 풍부한 사우디, 이란, 이라크 등의 중동국가를 빼놓을 수 없다. 사우디는 국영기업 Aramco를 중심으로 상당부분 원유가스의 탐사개발이 이뤄져 새로운 자원개발의 기회가 적고, 이란은 탐사개발할 원유가스가 풍부하나 원자력의 문제로 유엔과 미국의 경제제재로 말미암아 자원개발을 위한 진출이 불가능한 지역인 반면, 이라크는 미국의 이라크 점령 이후 자원개발의 기회가 폭증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라크 중앙정부는 2009년부터 원유가스의 개발생산권 분양을 위한 공개입찰을 진행 중이고, 현재 3차 라운드에 이르고 있다⁷⁾. 쿠르드 자치정부도 자체적으로 원유가스의 개발생산의 기회를 해외기업에게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가스공사가 이라크 중앙정부 주도 하에 이뤄지고 있는 공개입찰 등의 절차를 통해 주바이르, 바드라 지역의 원유가스 개발생산권을 획득하여 이라크의 자원 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한국석유공사 등이 쿠르드 지역에서 원유 탐사개발권을 획득하여 현재 탐사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향후 이라크 내의 자원개발 참여의 기회는 더욱 많아 질 것으로 보인다.

이라크의 경우 원유가스의 소유 및 그 개발권에 대한 기본법인 석유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논의 중에 있었고, 원유가스개발에 따른 소득세율 또는 법인세율을 15%에서 35%로 개정 예정인 국내 고유의 특성이 있는 국가이다. 또한 우리나라와의 관계에서는 투자보호협정이 체결돼 있지 않고, 이중과세방지협정도 체결되지 않은 국가 상호 간의 특성이 있으며, WTO의 회원국이 아니고, FTA가 체결된 국가가 없으며, 중재판정의 집행을 담보할 수 있는 New York Convention에도 가입돼 있지 아니한 국제적 특이성을 갖고 있는 국가이다. 그리고 정치적, 종교적으로도 불안정하여 자원개발 투자에 있어 상정할 수 있는 많은 악조건을 두루 갖춘 자원보유국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논의의 가치가 크다 할 수 있다.

앞서와 같은 이유로 이라크 자원 개발사업을 전제로 어떻게 하면 사업이익을 극대화하고 사업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를 짤 수 있는가를 논의하고자 하고, 그 구조화의 일환으로 네덜란드 특수목적회사(SPC)의 설립 타당성을 펴보기로 하겠다. 물론 이라크를 자원개발이 가능한 개발도상국의 대표적인 국가로 상정하여 논의를 전개하지만, 본고의 논의는 유사한 정치적, 경제적, 국제적 상황에 처한 다른 개발도상국의 자원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일용 시사점이 적지 않을 것이다.

7) 한국 정부는 대(對)이란 제재와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결의안 1929호를 성실히 이행한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2010. 6. 포괄적 제재추진 방향을 담은 '이란제재 국가이행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하였고, 미국이 요청하고 있는 독자제재의 경우 관련국들과의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 2010. 10. 초 미국의 시행세칙 발표를 전후해 최종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0. 8. 17. 11:36경 아래의 참고 사이트를 최종방문함. <http://www.yonhapnews.co.kr/issues/2010/08/09/1202840000AKR20100809121600043.HTML> 참조.

8) 관련 자료는 www.pclcd-iraq.com에 게시되어 있다.

본고 논의의 범위와 순서에 대해 살피건대, 이라크 자원개발을 전제로 하여, 자원개발을 위한 자회사 설립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그 경우 어디에 설립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에 대해 논의하고, 그 최적지 중 하나인 네덜란드에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어떤 회사구조를 택하고 어떤 금융조달 방법을 활용할 때 사업이익을 최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자원개발을 위한 자회사 설립의 필요성

2-1. 서설

한국회사가 해외 자원개발을 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의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먼저 자회사의 설립 없이 직접 사업의 주체로서, 자원개발 관련 계약서의 계약 당사자가 돼 직접 권리와 이익을 향유함은 물론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 자원개발 사업이 근래 BP의 멕시코만의 유정 사고로 큰 손실을 입게 되는 사례처럼 그 책임과 손해가 한국회사에게 직접 미치게 됨으로 인해 해외 사업의 실패가 한국회사의 존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탐사유정 10개 중 1-2개만이 성공하는 고위험 사업을 본질로 하는 자원개발의 경우 권유할 만한 방안은 아니 된다. 자회사를 설립하여 자원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사업 실패가 모회사인 한국회사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모회사는 극단적인 위험의 경우에 자회사의 사업을 청산하거나 파산시킴으로써, 무한히 확대될 수 있는 자회사의 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 등의 책임과 그에 따른 손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사업자금을 프로젝트 금융을 통해 조달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자회사 설립이 필요하다. 이 때 자회사는 자원개발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는 특수목적회사로서 프로젝트 금융에 적합한 도관으로 활용될 수 있다. 자회사에 대한 금융은 프로젝트 수행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담보로 이뤄지고 모회사에게 소구권이 전혀 인정되지 않았거나 소구권이 필수적 운영비용 등에 제한적으로만 인정된다. 한국회사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게 되면, 파산, 회생절차 등의 경우에 사업수행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프로젝트 금융의 원리금 변제에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프로젝트 금융을 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해야 한다. 한편 종전에는 자회사 명의로 사업자금의 조달이 이뤄지는 경우 모회사인 한국회사의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계상되지 않기 때문에 부채비율의 관리를 위해서라도 자회사를 설립해야 한다는 논리가 있었으나, 국제회계기준(IFRS)의 도입으로 자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함께 인식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이점이 상당 부분 희석되었다.

2-2. 모회사가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

생산물분배계약, 서비스계약, 리스계약 등 원유가스의 탐사개발권이 부여되는 자원개발계약의 경우, 자원보유국에서는 자금력·기술력 등이 인정돼 선택된 최초의 계약당사자가 사업 종료 시까지 사업을 직접 수행하길 원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계약자인 석유회사의 계약상 지위의 양도를 제한하고 있다. 만약 자금력 또는 기술력이 없거나 제한적인 석유회사가 계약상의 지위를 양수하여 사업을 진행하다가 감당할 수 없는 위험이 발생하게 되면, 그런 경우 자원보유국이 양수회사의 무능력에 따른 위험을 대신 떠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계약자인 탐사개발권자가 의결권 또는 이사선임권 등을 통해 지배 또는 통제하는 자회사 등의 관계회사들에 대한 계약상의 지위 양도까지 제한하는 것은 한 기업이 여러 형태의 관계회사를 소유, 운영하는 현실에 비춰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자원계약의 경우에도 그 현실적인 이유를 반영하여, 계약당사자가 과반수의 의결권 또는 이사선임권을 가짐으로써 지배 또는 통제하고 있는 자회사 등의 관계회사에 대해서는 계약상 지위의 양도를 허용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에 자원개발의 자금력, 기술력에 변화가 발생하면 안 되고, 양수회사인 자회사는 프로젝트를 목적으로 하는 특수목적회사에 불과하여 자금력과 기술력을 양도회사인 모회사에 의존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양도 후에도 양도회사가 양수회사의 자원개발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와 책임을 연대보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위와 같은 모회사가 자회사의 자원개발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와 책임을 연대보증한다고 한다면, 모회사가 자회사의 책임과 손해로부터 절연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회사의 설립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다. 그러나 모회사가 연대보증으로 인해 계약상의 책임과 그로 인한 손해는 떠안게 되었지만, 자원개발 이외의 계약상의 책임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에 있어서는 적어도 절단돼 있으므로 자회사 설립의 의미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본다. 자원개발계약의 경우 생산물분배계약은 물론 서비스계약에서도 비용회수 또는 수익금지급의 명목으로 원유가스의 현물을 지급받기도 하는데, 그 경우 자회사가 그 원유가스의 처분을 목적으로 하는 석유판매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데, 이 때 자회사의 석유판매계약의 채무불이행 위험으로부터 모회사의 책임이 절연될 수도 있다. 또한 금번 BP의 멕시코만 폭발사고처럼 불법행위가 인정될 여지가 있는 경우, 모회사가 자회사 설립으로 인해 그와 같은 불법행위의 책임으로부터 역시 절연될 수도 있다.

3. 자회사 설립지의 선택

3-1. 서설

이라크의 자원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어느 국가에 설립해야 하는지 문제가 된다. 우선 사업의 편의상 이라크 현지에서 설립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고, 단순히 의무와 책임의 절연을 목적으로 하는 자회사라고 한다면 관리의 편의상 한국에서 설립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당장 세금을 덜 내는 회사 설립지를 선택한다면 버뮤다, 키프러스 등의 조세피난처가 떠오르는 것이 사실이다.

자원개발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자회사를 어느 국가에 설립할지 정할 경우, 먼저 그 최우선의 설립 목적인 '자회사 책임으로부터 모회사의 절연'에 충실한 법 제도를 갖고 있는가를 살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설립지의 회사법제가 그런 목적에 충실해야 할 것이고 자회사에게 부당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국제투자분쟁절차(ISD)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국제투자분쟁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선행조건이 되는 FTA나 양자 간 투자보호협정이 체결돼 있어야 하고, 분쟁절차를 통해 얻은 중재판정의 집행을 담보할 수 있는 New York Convention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더 나아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자원개발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를 고려해야 한다. 이는 자회사가 자원개발 사업을 통해 벌어들이는 사업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 등에 대하여, 어느 지역에 설립할 때 최소의 세금을 내고, 국내 모회사가 최대의 사업수익을 거둘 수 있는가의 문제와 관련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중과세방지 협정이 없는 국가에 납부한 세금에 대해 50%만 세액공제의 받게 하는 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자회사 설립 국가와 우리나라 사이에 이중과세방지조약이 있는가도 중요한 잣대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자원개발의 경우 대단위 자금을 필요로 하므로 프로젝트 금융의 필요성이 큰데, 그 경우 자회사가 금융당사자가 될 것이므로, 은행이나 기관투자자들이 기피하는 지역에 설립된 자회사이면 안 될 것이므로 이 또한 고려 대상이다. 더 나아가 한국회사가 자회사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되기 위해서는 자회사 설립지에서 그러한 법적 권리를 갖는 회사 유형을 인정하고 있어야 하고, 그런 유한책임을 향유시킬 수 있는 제반 요건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이하에서는 앞에서 살핀 자회사 설립지 선택의 여러 기준들을 토대로, 특히 자회사의 위험으로부터 한국 모회사를 보호하기 위해 또는 세금을 가급적 덜 내 회사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어느 국가에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9)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6

3-2. 이라크 내 자회사 또는 손회사 설립

이라크에도 모회사의 책임 절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일명 LLC) 제도가 있으므로 이를 설립하여 자원개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이라크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일반관리인(general manager), 회계책임자(auditor), 법률고문(legal advisor) 각 1인을 두면 설립할 수 있고, 회계책임자 및 법률고문이 이라크 시민이어야 하는 제한이 있지만, 일반관리인은 외국인이자라도 상관이 없으므로 회사의 자율적 운영에 큰 문제가 없다. 그러므로 이라크 현지에서 한국회사의 자회사를 직접 설립하거나, 이라크와 투자보호협정이나 FTA 또는 이중과세방지조약을 체결한 국가에 일차적으로 자회사를 설립한 후 그 회사의 자회사, 즉 한국회사의 손회사를 이라크에 설립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과 이라크 사이에는 이중과세방지조약이 체결돼 있지 않고, 양자 간 투자보호협정도 전혀 없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앞서 살핀 위 협정 등을 토대로, 절세에 따른 이익 극대화나 투자보호 등을 통한 위험 최소화를 기대하여, 이라크 현지에서 자회사를 설립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라크 사이에 위 협정 등이 체결된 제3국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이라크에 손회사를 설립하여 앞서 기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라크가 양자 간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이 유일하며, 과세관련 다자간 협정의 경우에도 단 하나의 협정에만 가입돼 있을 뿐이다. 1973년의 아랍 경제연합체회의 소득세협정¹⁰⁾이 그것인데, 요르단, 수단, 시리아, 쿠웨이트, 이집트, 예멘 그리고 이라크가 가입국이다. 또한 이라크는 어느 국가와도 FTA를 체결하지 않았고, 쿠웨이트와 양자 간 투자보호협정이 체결되었으나, 현재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 1980년 아랍국가들의 아랍자본 투자를 위한 아랍국 연합협정¹¹⁾ 및 1981년 이슬람 회의체 조직의 투자 장려, 보호 및 보장 협정¹²⁾의 가입국일 뿐이다. 독일과는 2008년 양자 간 투자보호협정안에 합의하였지만 아직 서명되지 않은 상태이다. 다만, 앞서의 다자간 투자보호협정들의 경우에도 일반의 국제적인 투자보호협정과는 다소 거리가 있으므로, 순수 투자보호 관점에서 설립지를 선택한다고 한다면 어느 국가도 해당사항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순수 세무적 관점에서, 즉 투자 이익을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보면, 위 중동 국가들 중 한국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한 국가 중 한 곳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이라크에 손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점을 설치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10) Arab Economic Unity Council Income Tax Treaty를 일컫는다.

11) Arab League Unified Agreement for the Investment of Arab Capital in the Arab States를 일컫는다.

12) the Organization of the Islamic Conference 1981 Agreement on Promotion, Protection and Guarantee of Investments를 일컫는다.

이라크 현지 세법에 의하면, 이라크 자회사나 지점으로부터 해외 모회사로 지급되는 배당이나 자산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세무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굳이 이라크 원유가스 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위 중동국가들 중 한 곳에 자회사를 설립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더욱이 이라크뿐만 아니라 앞서 열거된 중동국가들의 경우에도 외국투자의 보호, 외국회사의 소유권의 제한, 기업 활동의 규제적 요소, 불충분한 지주회사제도 등 국제법 및 국내법의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결국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모회사가 자회사의 위험으로부터 분리되는 유한책임을 충분히 향유키 어려울 것이고, 이라크 투자에 대해서도 보호받는 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3-3. 한국 내 자회사의 설립

한국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그 회사로 하여금 이라크 현지에 지사를 설치하여 원유가스 개발사업을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한국 내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이므로 양자 간 투자보호협정이나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업의 위험의 절연이나 사업이익의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다.

우리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서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와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의 관련회사형태를 규정하고 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함) 상 투자회사와 사모투자전문회사로 취급하고 있는데, 먼저 위 회사형태를 자회사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논의될 수 있다. 그러나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는 자본시장법 상 집합투자기구로서 설립절차가 복잡하고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투자회사, 그 자산을 보관, 관리하는 신탁업자,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인을 필요로 하고,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도 설립절차 및 기준 등이 자본시장법의 규율을 받고 유한책임사원과 무한책임사원의 구성을 필요로 하는 등으로, 양자 모두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투자하기 위한 실질적인 회사에 해당하므로, 단순히 투자의 도관 내지 형식에 불과한 특수목적회사로 활용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다.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조합 등도 앞서 살핀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나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와 같이 설립, 운용, 이익의 실현 등에 많은 제약 절차가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고, 역시 특수목적회사란 투자 형식으로 활용하는 데에는 본질적 한계가 있으므로 역시 해외자원개발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자회사 형태로는 부적합하다.

한편 우리 상법에서는 일반회사의 형태로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을 두고 있으므로 그 회사 형태를 활용한 자회사 설립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특정의 해외 사업을 하기 위해 그 실질적인 사업주체인 모회사를 두고 별도로 국내에 자회사를

두는 것은 단순히 사업에 따른 법적 책임의 회피만을 위해 설립한 것으로 인정받기 십상이므로 법인격부인 이론에 따라, 오히려 자회사의 법적 책임과 위험이 모회사의 것으로 그대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 또한 청산절차에 이르게 되는 경우 법정 청산절차에 따라 청산인을 등기하고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생길 수도 있다. 세무상 효과 측면에서는 자회사가 특수목적회사로서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여 연결납세를 기대하기도 어렵고, 또한 투자수익이 자회사에서 모회사로 배당 또는 자산배분의 절차 등을 통해 지급될 때,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 경우 100% 자회사가 아닐 경우에는 이중과세가 될 가능성이 있어 불리할 여지도 있다.¹³⁾

국내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한 번거로운 절차를 밟아야 하는 문제도 있다. 국내회사가 자원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해외사업에 투자 내지 용자를 하는 것은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 나목 및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른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므로, 국내회사가 자금을 해외로 지급하는 경우 외환거래규정 제9-5에 의해 지정은행에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해외에 자회사를 설립하면 출자 또는 대여 형식으로 필요 사업자금을 한두 차례로 나눠 사전에 보내고 그 이후 해외 자회사에서 자원개발 계획에 따라 순차적, 효율적으로 그 자금을 집행하면 된다. 그러나 국내 자회사가 설립되면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해 위와 같은 자금집행의 편의성이 사라진다.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서 크고 작은 자금을 필요로 할 때마다 외환거래규정에 따른 신고를 매번 하고 신고금액만큼만 집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 시의 적절하고도 효율적인 자금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고, 계약 불이행의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

3-4. 조세피난처 내 자회사 설립

앞서와 같이 이라크 또는 한국에 자회사 설립하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다음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이 키프러스, 라부안, 버뮤다 등의 조세피난처이다. 이러한 조세피난처에 회사를 설립하는 이유로는 일반적으로 외화자금의 국내외 입출입이 상당히 자유롭다는 점과 투자수익을 모회사에 배당하지 않고 조세피난처에 보관하여 다른 곳에 전용할 수 있다는 점과 배당이나 이자, 자본소득 등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아 투자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외화자금의 입출입이 조세피난처 이외에서도 완화된 형태로 이뤄지는 곳이 많고, 투자수익을 모회사에 배당하지 않고 조세피난처에 보관하는, 속칭 파킹(parking)을 해둔다고 하여도 간주배당에 의해 그 효과가 사라질 수 있으며, 국가

13) 법인세법 제18조의 3

에 따라서는 한국과 양자 간 이중과세방지조약을 통해 배당이나 이자 등의 소득에 과세가 이뤄지지 않거나 극히 미미하게 이뤄지는 곳도 있고, 조세피난처를 통한 거래의 경우 일반적으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여 오히려 세제상 불리할 수도 있으므로, 조세피난처에 대한 자회사 설립은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

3-5. 소결

해외, 특히 이라크의 자원개발을 염두에 두고 최적의 설립 후보지로서 이라크, 한국, 조세피난처를 살펴보았지만, 각기 나름의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뿐만 아니라 세계의 많은 기업들이 회사 설립지로 선호하고 있는 네덜란드의 경우는 어떠한지, 앞서의 설립지들과 비교해 어떤 장점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세제 측면의 이익을 기준으로 네덜란드와 비교되는 국가로 벨기에가 있는데, 벨기에 에 자회사로서 Sarl을 설립하는 경우, 한국의 모회사가 그곳으로부터 주식 배당금을 받거나 및 양도소득(captal gain)을 벌어도 지분참여 면제(participation exemption)¹⁴⁾ 제도를 통해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고,¹⁵⁾ 자본금 투자에 대해서도 이자처럼 일정 한도에서 비용인정을 받을 수 있는 세제상 장점이 있어 벨기에에서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배당금 면제자격을 갖추려면 주식 참여수준이 최소한 5% 또는 12,500유로 이상이어야 하고, 면제자격이 되는 배당금도 벨기에 회사로부터 발생하는 경우 벨기에에 33.99%의 법인세를 납부하는 회사여야 하며, 비거주 회사로부터 발생하는 경우는, 해당국가에서 법인세를 납부하는 회사이어야만 한다. 아울러 세제가 전반적으로 벨기에보다 유리한 국가에 소재한 회사로부터 발생하는 배당금, 비거주 국가에서 예외적 세제혜택을 받고 있는 지주 또는 금융회사로부터 발생하는 배당금, 투자업체로부터 발생하는 배당금, 외국 소재회사로부터 오는 배당금으로서 그 회사가 분배하는 소득 자체가 면세대상이 아닌 배당금 등의 경우에는 면세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이런 난점들을 고려하면 역시 자회사 설립지로서의 벨기에 매력은 앞으로 살필 네덜란드보다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는다.

14) 네덜란드의 경우에도 지분참여면제제도가 있으나, 그 적용요건이 까다로워 활용도가 크지 않다.

15) 이런 세금면제에 해당될 경우 주식 배당액의 95%가 소득에서 공제된다. 그러나 이러한 공제로 과세대상액이 마이너스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벨기에에 설립된 기업이 손해를 보고 있을 경우(loss position)에는 배당금은 면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4. 사업수익 기준으로 본 자회사 설립 최적지

4-1. 서설

자회사 설립의 이유 중 하나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업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해외 자원개발로부터 모든 제세 공과금을 공제하고 얼마의 수익이 한국기업에 주어지는가에 따라 최적의 자회사 설립지를 발견할 수 있다. 이라크 자원개발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이라크 지점 설치 또는 고정사업장 인정으로 인해 이라크 현지에서 자원개발소득에 대한 세금을 낼 수밖에 없고, 네덜란드에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비록 특수목적회사라는 형식적 회사라고 할지라도 이라크 자원개발소득의 귀속 주체로서 마찬가지로 네덜란드에서 법인세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국내 모기업인 한국회사도 네덜란드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이자를 통해 최종적으로 이라크 자원개발투자의 이익을 실현할 것이고, 이러한 국외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라크 자원개발사업의 참여로 인한 소득에 대해 이라크, 네덜란드, 한국에 앞서와 같은 세금을 납부해야 함으로써 하나의 소득에 대하여 3단계의 과세 효과가 중첩적으로 발생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중첩적 과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국 세법에서 세액공제 또는 세금상당의 비용공제 등이 인정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한국의 경우 해외 자원개발에 대한 정부 지원책의 일환으로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법인세 공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필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이라크, 네덜란드, 한국 순서대로 세제제도 및 그 효과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는데,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유한책임회사 BV를 기준으로 살펴보기로 한다.¹⁶⁾

4-2. 이라크 과세제도

이라크 소득세법은 원칙적으로 외국회사가 이라크 내 사업을 함에 있어 자회사 설립을 통해 영위하던 지점을 등록하여 활동하던 세무상 효과에 있어 차별을 두고 있지 않다. 어느 경우이든지 이라크 내 사업으로 인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므로 절세를 통해 사업이익을 극대화한다는 관점에서 자회사의 설립 필요성을 논의할 때 이라크는 자회사 설립의 필요가 없다고 할 수 있다.

16) 민사법인인 Coop이 있고, 세무상 장점 때문에 회사조직 형태로 활용되고 있으나, 이곳에서는 정식의 회사법상의 유한책임의 회사형태인 BV를 기준으로 논의하고, 나중에 회사구조를 논의할 때 Coop과 BV의 연계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이라크 과세당국은 세법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많은 재량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협의하느냐에 따라 과세효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그런 특수한 사정을 배제하고 명문의 법규정만을 기준으로 살피고자 한다. 이라크에서는 원유가스에 대한 투자를 이라크 투자법 상의 투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라크 투자법 상의 많은 혜택을 원유가스개발에 참여하는 회사들에게 부여하지 않아도, 이에 대한 참여 수요가 충분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더불어 이라크 중앙정부의 원유가스 개발생산권의 부여형태는 서비스계약¹⁷⁾으로서, 외국회사는 단지 개발생산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고 그에 대하여 일정의 비용과 수익을 현물 또는 현금을 통해 보상받는 구조이므로 이라크 투자법 상의 투자 개념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지도 모르겠다.

이라크 소득세법은 1982년 제정돼 여러 차례 개정이 이뤄졌는데, 통상적인 영업으로 인한 법인소득에 대한 세율은 CPA 제49호의 개정을 통해 15%의 고정세율로 변경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다만 이라크 정부 승인 이후 현재 국회에 상정 중인 CPA 제84호의 개정 세법안에 의하면 외국 석유회사의 소득에 대해서는 35%로 인상한다고 한다. 이에 대해 그 세율이 낮게 조정될 수도 있고 국회 통과 여부에 대해 불투명하다는 논의도 있지만, 적어도 현재 이라크 중앙정부¹⁸⁾와 해외 석유회사들과 체결한 원유가스 개발생산에 관한 표준서비스계약에 의하면, 원유가스의 서비스계약자는 서비스제공에 따른 보수¹⁹⁾에 대해 35%의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규정돼 있으므로, 이라크 내 자원개발에 대한 법인세 부담은 고정세율 35%로 확정하여 인식하면 될 것이다.²⁰⁾

이라크 법²¹⁾에 의하면 국영기업을 포함한 모든 정부기관은 계약자가 세금완납증명서(tax clearance certificate)를 제출하여 더 이상 납부할 세금이 없음을 증명하기 전까지는 모든 대금지급에 있어 10%를 원천징수하여 보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더 나아가 2008년 2월 행정지도(Instruction)를 통해 원천징수 의무를 민간

17) 쿠르드 자치정부의 경우에는 생산물분배계약이 이용되고 있다.

18)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라크 중앙정부로부터 원유가스 개발생산권을 위임받은 이라크 국영석유회사이다. 이라크의 경우 헌법으로 원유가스의 소유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천명하고 있고, 이라크 중앙정부가 국민을 위하여 원유가스의 개발생산권을 행사하도록 돼 있는데, 통상 국영기업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여 직접 행사하도록 하고, 이라크 중앙정부 석유부에서 이를 감시, 통제하고 있다.

19) 해외 석유회사들이 원유가스 개발생산으로 거둬들일 수 있는 수입으로는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보수인 remuneration fee와 서비스계약 상 보너스, 교육비 제공 등에 대한 회수 비용인 supplementary cost의 이자소득 등이 있을 수 있다.

20) 현재 이라크 중앙정부에서 원유가스 개발생산을 위한 서비스계약 입찰을 위해 제3차 라운드가 진행 예정인데, 입찰 계약당사자에게 적용될 표준계약에 의하면, 서비스계약자는 소득에 대해 35%를 부담하게 되고, 이라크 법령 변경 등의 이유로 적은 세금을 내는 경우 국영석유회사에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하고, 반대로 법령 변경 등의 이유로 35%를 초과하는 세율이 적용돼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경우 국영석유회사로부터 그 차액을 보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21) 1982년 제113호 법령 제23조에 따른 것임.

기업에도 확대 부과하였고, 계약자에 대한 대금지급의 경우에도 4-5%를 원천징수하여 세무당국에 납부토록 하고 있다. 계약자가 하도급 계약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원천징수의 의무를 부담한다. 이와 같이 원천징수된 세금은 계약자의 최종 납세의무 이행 시 세액공제를 받게 되고, 그래도 잔여액이 있으면 환급을 받도록 돼 있다. 원유가스의 서비스계약에도 이와 같은 원천징수제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므로 다소간 사업의 경제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나, 그 영향이 크지 않으므로 사업수익을 계산하는 데에는 고려하지 않도록 하겠다.

해외자원개발의 경우 대단위 자금이 소요되고 사업의 위험성도 크며, 여러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므로 대개 자금력 내지 기술력 있는 여러 회사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라크 원유가스의 개발생산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다국적 석유회사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에 참여하였는데,²²⁾ 이렇듯 동일 사업에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세무상 영향이 없는지 문제된다. 이라크의 경우 컨소시엄을 원칙적으로 조합(partnership)²³⁾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공동으로 소득세를 신고하되, 조합의 지분 비율에 따라 각 회사의 소득과 손실을 명시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원칙에도 불구하고 실무상 각 회사별로 세무등록을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고, 각자 수입에 따라 신고하는 것도 수리하고 있다. 컨소시엄 회사들은 모든 수입의 총액을 제대로 신고하여 소득세가 납부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컨소시엄 대표 회사가 서비스계약 이행과정에서 벌어들인 모든 소득에 대해 정확한 과세신고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과세당국에 제출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처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자원개발에 참여하는 경우 타 컨소시엄 회사의 납세의무 불이행의 위험이 자회사로 전가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투자비율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면 되므로, 본고에서는 위와 같은 예외적 위험상황을 사업수익을 계산하는 데 특별히 고려하지 않도록 하겠다.

4-3. 네덜란드 과세제도

네덜란드 회사법 상의 유한책임회사 BV를 자회사로 선택하여 설립한 경우, 이

22)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제1차 입찰의 경우 주바이르 유전을 이탈리아의 Eni, 미국의 Oxy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서비스계약을 체결하였고, 제2차 입찰의 경우 바드라 유전을 러시아의 Gazprom, 터키의 TPAO, 말레이시아 Petronas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서비스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23) 컨소시엄은 법인화 되지 않은 합작기업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우리 민사법상의 개념인 조합으로 해석하였지만, 각국의 법제도에 따라 그 개념이 포섭하는 구체적 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우리 조합 개념과 동일시하는 데에는 여러 난점이 있다.

라크 자원개발사업의 서비스계약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 네덜란드 세무당국에 25.5%의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고,²⁴⁾ 나머지 수익에 대해 한국 모회사에 이자 또는 배당 형태로 지급을 하는 경우 역시 원천징수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한국과 네덜란드 사이에는 양자 간 이중과세방지조약이 체결돼 있고, 동 조약에 따르면 네덜란드 자회사가 한국의 모회사에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하여는 10%²⁵⁾의, 이자에 대하여는 15%의 제한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네덜란드 국내 세법에 의하면, 네덜란드 회사가 외국 회사에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가 면제되고 있고, 위 조약은 네덜란드 국내 세법에 따라 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적용되는 특별법에 해당하므로, 한국기업이 네덜란드 자회사로부터 이자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네덜란드 세법에 의하면, 네덜란드 회사가 해외 고정사업장에서 소득을 벌어들이고, 그 고정사업장이 소재한 국가에서 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는 경우 이중과세경감²⁶⁾ 규정이 적용되고, 이에 의하여 네덜란드 회사는 국내에서 세 부담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감면세액의 규모는 전세계소득금액(world wide income) 중 네덜란드 세법에 따라 계산된 국외원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에 전세계소득에 대한 네덜란드 법인세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즉 계산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text{감면세액} = \frac{\text{네덜란드세법에 따라 계산된 국외원천소득}}{\text{전세계소득금액}} \times \text{전세계소득에 대한 네덜란드 법인세액}$$

4-4. 한국의 과세제도

4-4-1. 외국납부세액공제

국내 법인세법은 한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당해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이나,²⁷⁾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중 하나를

24) 네덜란드 법인세법(CIT)에 의하면, 과세표준이 20만 유로에 이르기까지는 20%의 세율이, 그 금액을 초과하는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이 각 적용된다.

25) 네덜란드 세법에 의하면 외국회사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해 15%의 원천징수를 하도록 돼 있다.

26) Relief of double taxation이라고 일컫고, 이 규정에 따라 네덜란드 현지의 법인세를 감면받는 것을 면제방식, 즉 exemption method에 의한 감면이라고 하여, 세액공제에 의한 감면과 비교되는 개념이다.

27) 법인세법 제55조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차지하는 비율을 한도로 하고,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다음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그러므로 한국회사가 네덜란드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네덜란드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이 한국회사의 실질법인세율을 초과하지 않는 한 한국회사가 납부할 법인세액에서 직접 공제가 가능하다.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 자회사²⁸⁾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되는 경우, 한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에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면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에 따라, 조세조약에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있거나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되, 내국법인이 외국 자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외국 자회사의 배당·잉여금 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6 제1항에 따라, 각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네덜란드 자회사가 이라크에 지점을 설치하여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한국회사는 그만큼 이라크 자원개발에 따른 수익을 더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외국 자회사가 제3국에 지점을 설치하고 그곳에서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도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논의가 돼 왔었는데, 2010. 2. 18.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3 제1항에 의하여 입법적으로 명확히 해결되었다. 즉 동 규정에 의하면 외국 자회사가 제3국²⁹⁾에 소재하는 지점 등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제3국에 납부함으로써 외국 자회사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았거나 공제받을 금액도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의 대상에 포함하도록 돼 있다.³⁰⁾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의할 경우 네덜란드 회사가 이라크 지점의 자원개발사업으로 인해 이라크 세무당국에 납부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네덜란드의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채택하는 것이 아니라, 감면제도(exemption method)를 채택하고 있고, 그에 따라 해외 지점에 낸 세금에 대해 일정 방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감면해 주고 있을 뿐이므로, 이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외국자회사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았거나 공제받을 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그러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 안에서 이를 공제받을 수 있다.

28)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원칙으로 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경영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중 내국법인이 직접 출자한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29)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등을 둔 국가 외의 국가를 말한다.

30) 다만, 공제율은 공제받았거나 공제 받을 금액 중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나 자회사의 외국 지점에서 납부한 세금도 일정한도에서 세액공제나 비용공제해주는 것이 조세정의 관념에 부합하고, 세액공제나 감면이 동일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는 점에 있어 공통되고 단지 그 규모를 산정하기 위한 방식에 있어 차이가 있을 뿐이란 점 등을 고려할 때, 네덜란드 자회사가 이라크 지점을 통해 낸 35%의 법인세도 한국회사가 간접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입법적으로 이러한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법령 개정이 바람직하다.

4-4-2. 해외자원개발투자 관련 법인세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5에 의하면,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원유가스 등의 광물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나 출자, 즉 1) 광업권과 조광권을 취득하는 투자, 2)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기 위한 출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 3)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로서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 가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신청을 통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³¹⁾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원유가스개발권 취득과 관련한 라이선스계약, 생산물분배계약, 서비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계약상의 권리가 위 조세특례제한법 소정의 광업권 또는 조광권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지식경제부 유권해석에 의하면, “광업권과 조광권의 취득을 위한 투자나 출자는 조광계약, 생산물분배계약 및 서비스자원개발사업계약 등 계약의 형태에 불구하고,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외 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해외 자원개발 사업자가 동 사업계획에 따라 광물을 채취하고 취득할 수 있는 사업에 투자나 출자한 경우(다만, 확정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제외)를 말한다”고 해석한 바 있으므로, 이라크 정부의 공개입찰을 통해 한국회사가 참여한 원유가스개발생산을 위한 서비스계약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회사가 2010년 12월 31일까지 네덜란드 자회사를 통해 이라크 원유가스 개발사업에 출자한 금액의 3%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위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법인세 공제 혜택이 주어질 수 있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5 제4항에 따르면,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보조금을 받아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

31)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식 또는 출자지분을 「법인세법」 제36조 제1항의 사업용 자산으로 보아 같은 조를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회사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 회계법에 따라 보조금을 받아 네덜란드 회사를 통해 이라크 서비스계약 상의 출자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도 손금 인정을 받을 여지가 있다고 본다. 물론 네덜란드 회사에 출자하고 그 출자자금으로 서비스계약 상의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때문에 직접투자가 아니지 않나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으나, 네덜란드 회사가 이라크 자원개발을 위한 도관에 불과한 특수목적회사인 점을 감안하면 역시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손금을 인정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위 손금 제도 역시 해외 자원개발로 인한 한국회사의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데 일익을 담당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보조금 수령 여부 및 손금대상이 되는 보조금의 규모가 불확실하므로, 아래에서 보는 한국회사의 자회사 선택에 따른 세후 순이익을 비교할 때에는 그 고려대상에서 배제하고자 한다.

4-5. 자회사 설립 여부 및 설립지 선택에 따른 사업수익 비교

아래의 도표에서는 앞서 살펴본 과세제도들을 종합하여, 한국기업이 이라크, 네덜란드, 한국에서 관련 세금을 납부 또는 공제 등을 받은 후 얼마의 순수 사업수익을 얻을 수 있는가를 살펴보겠다.

자회사 설립 없이 이라크 자원개발 사업을 하는 것은 법적 리스크의 전이로 그 위험이 크나, 만약 그 위험의 크기를 무시할 만큼 사업수익이 월등히 많다고 한다면 자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한국회사가 직접 이라크 자원개발 사업의 계약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자회사 설립 없이 이뤄지는 경우도 비교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한 이라크 현지에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앞서 살핀 여러 위험성으로 인해 고려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으나, 역시 이라크 자회사 설립으로 세후 사업수익이 다른 사례보다 엄청난 규모로 월등하다고 한다면 이라크 자회사 설립을 선택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현명할 수도 있으므로 비교대상에 포함시켰고, 해외사업의 경우 무조건 조세피난처에 설립해야 세금을 절약하고 사업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적지 아니하므로, 과연 그러한지 여부를 따져보기 위하여 역시 조세피난처에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세후 사업수익이 다른 사례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기로 한다.

	한국회사	조세피난처 자회사	이라크 자회사	네덜란드 자회사
이라크 수입금액	100	100	100	100
이라크 법인세(35%)	35	35	35	35
자회사 수입금액	0	65	65	65
자회사 법인세	0	0	0	25.5 ³²⁾
자회사 외국납부세액공제	0	0	0	25.5
배당금 지급 시 원천징수세액	0	0	0	6.5
한국회사 수입금액	65	65	65	58.5
한국회사 법인세(24.2%) ³³⁾³⁴⁾	24.2	15.7	20	17.8
한국회사 외국납부세액공제 ³⁵⁾	24.2	0	17.5	15.3
세후 사업수익	65	49.3	62.5	56

32) 네덜란드 법인세율은 25.5%이고, 한국회사에 배당금 지급 시 10%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가정했다.

33) 법인세율 22%에 그 중 10%에 해당하는 주민세를 포함하여 계산한 금액이다.

34)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6 제6항 및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법인세액 계산 시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 간접외국납부세액 상당액을 가산하여야 한다. 각 사례별 법인세액 산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 한국회사: $(65+35) \times 24.2\% = 24.2$

- 조세피난처 자회사: $65 \times 24.2\% = 15.7$

- 이라크 자회사: $(65+17.5) \times 24.2\% = 20$, 단 이라크의 경우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간접납부세액 공제 범위 산정 시, 법인세 납입금액의 50%만 적용되므로 $17.5(=35 \times 50\%)$ 에 이르게 되었다.

- 네덜란드 자회사: $(58.5+6.5+17.5 \times 50\%) \times 24.2\% = 17.8$

35)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한도로 하고, 공제를 초과하는 금액, 예를 들어 한국회사가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10.8(=35-24.2)$ 이 당해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 내에서 이를 공제받을

4-6. 소결

앞서의 도표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세후 사업수익을 기준으로 보건대, 한국회사가 직접 이라크 자원개발 사업을 하는 사례와 이라크에 자회사를 설립하는 사례는 비록 네덜란드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하는 사례보다 더 많은 사업수익을 거두고 있지만, 그다지 큰 차이를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자체가 본질적인 위험을 안고 있다고 한다면 이라크 자원개발 사업을 위한 사업조직으로 채택하면 아니 될 것이다. 그런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라크는 국내외적인 여러 법제도가 미비하여 자회사 설립으로 인한 소기의 목적을 거두기 어렵고 또한 정치·경제적 상황으로 인한 위험성까지 적지 아니하므로 자회사 설립을 통해 자원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 한국회사가 자회사 설립 없이 직접 참여하게 되면 이라크 자원개발 사업으로 인한 위험성이 한국회사에 그대로 미치기 때문에 BP의 멕시코만 사고와 같은 극단의 경우 한국회사의 존립도 위협할 수 있으므로 법적 책임의 절연을 위한 자회사의 보호막이 없는 한국회사의 직접 사업 참여도 위험하다. 결국 한국회사의 사례와 이라크 자회사의 사례는 이라크 자원개발 사업의 구조로서 채택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조세피난처에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네덜란드에 BV 형태의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는 것보다 세제상으로도 전혀 유리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결국 세후 사업수익을 최대화하고 사업의 위험성의 최소화하는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구조로는 네덜란드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이라크의 자원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방안밖에 없다.

5. 네덜란드 자회사의 구조

5-1. 서설

앞에서는 네덜란드에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회사법상 인정되는 유한책임회사인 BV만을 상정하여 논의를 하였고, BV는 모회사인 한국회사에 배당소득을 지급

수 있는데, 각 사례별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 한국회사: $\text{Min}[\text{공제대상 외국납부세액}, \text{한국회사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 \text{Min}[35, (65+35) \times 24.2\%] = 24.2$
- 조세피난처 자회사: $\text{Min}[0, 65 \times 24.2\%] = 0$
- 이라크 자회사: $\text{Min}[35 \times 50\% = 17.5, (65+17.5) \times 24.2\% = 20] = 17.5$, 단 이라크의 경우 이중과세 방지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간접납부세액 공제 범위 산정 시, 법인세 납입금액의 50%만 적용되므로 $17.5 (= 35 \times 50\%)$ 에 이르게 되었다.
- 네덜란드 자회사: $\text{Min}[(6.5+17.5 \times 50\%) = 15.3, (58.5+6.5+17.5 \times 50\%) \times 24.2\% = 17.8] = 15.3$

할 때 10%를 원천징수해야 하므로, 그 상당액 정도가 한국회사의 세후 사업소득에서 줄어든다고 살펴보았다. 만약 네덜란드에서 배당소득 10%의 원천징수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면, 네덜란드 자회사의 설립은 한국회사가 직접 자원개발 사업을 운영하는 사례나 이라크 자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사례 못지않게 세후 사업 수익이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

네덜란드에는 Coop이란 조직제도가 있는데, 영리 사단법인에 유사한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BV 대신에 Coop이라는 조직 또는 회사가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근래 활용도가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Coop의 조직을 잘 활용하면 모회사인 한국 회사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징수가 없다. 아래에서는 Coop을 어떻게 활용할 때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적용되지 않는지 살펴보기로 하고, Coop이 BV와 어떻게 다르고, 실제 Coop을 활용할 때 세후 사업수익이 좋아질 가능성이 큰지 검토해 보기로 한다.

5-2. Coop의 활용가능성

5-2-1. Coop의 법적 성격

Coop은 법적으로 독립된 형태의 조직으로 인정받고, 네덜란드의 일반 민사조직³⁶⁾에 적용되는 규정들이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Coop은 네덜란드 회사법상의 조직형태인 NV나 BV에 적용되는 자본충실의 원칙과 관련된 규정 등 많은 강행규정들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정관 내용을 개별적인 목적에 부합되게 신축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러한 유연한 법적 조직의 근거에는 그 주된 설립 목적이 이익의 창출에 있지 않고, 구성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Coop은 구성원들이 자본이나 기술 등을 공동 모집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주로 농업, 주택건설, 금융업 등에 활용이 되었다. 근래에는 세제상 혜택과 유연한 법률 구조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지주회사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독립된 법인격으로서 인정되기 때문이므로 구성원들의 무한책임을 전제로 하지 않고,³⁷⁾ Coop 명의로 자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보유할 수 있다.

36) 영어로 association, 네덜란드어로 verenigen라고 표현된다.

37) 네덜란드 민법에서 Coop의 정관으로 구성원들이 유한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무한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W.A.를, 유한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B.A.를,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는 U.A.를 Coop 뒤에 각 붙여 일반인들이 Coop의 구성원들이 어떤 책임을 부담하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므로 Coop의 채무에 대하여 구성원들이 전혀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 Coop U.A.로 표시해야 한다.

5-2-2. Coop의 특징

Coop은 네덜란드 공증인 앞에서 공증서를 작성함으로써 설립되는데, 최소 2인 이상의 발기인이 요구되고 있다. BV와 달리 법무부의 승인이나 은행 거래증명서 등은 설립 요건이 아니고, 설립절차가 간소한 만큼 2-3일 내 설립이 가능하므로 신속한 자회사 설립을 요하는 경우 활용하면 유용하다. Coop의 구성원이 1인밖에 안 남는 경우 해산사유가 되는지 명문의 규정이 없다. 다만, 그런 경우 최소 2인 이상의 발기인을 요하는 규정에 비추어 법원에 의해 명령에 따라 해산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 다수설적 견해이다. 최소자본금에 대한 규정이 없고, 구성원의 Coop에 대한 지분권을 지분권 A, 지분권 B 등의 각기 다른 내용으로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다. 현금배당 등에 대한 규정도 없으므로 정관이나 구성원합의에 따라 이를 허용할 수 있고, 구성원 지분권의 자유로운 양도도 가능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 해산 및 청산은 구성원 전체 회의의 찬성 또는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으로 자유롭게 가능하다.

5-2-3. 절세 목적의 Coop 이용

유럽연합의 모자회사에 관한 명령³⁸⁾에 따라, 유럽연합 회사가 다른 유럽연합 회사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는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를 회피하기 위해 Coop을 이용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유럽연합 이외의 지역에 속한 회사, 즉 한국회사 등에게 배당하는 경우에는 앞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원천징수가 이뤄진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Coop을 지주회사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면제되므로 이러한 절세 목적이라면 Coop의 이용가치는 분명 있다. 위와 같이 설립절차와 운영조건 등이 간소하고 유럽연합을 감안한다면 그 활용도는 더욱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5-2-4. 지주회사로서의 Coop의 활용가능성

네덜란드만의 세제효과만을 보면, 지주회사로서 Coop의 활용가능성이 높음에 틀림없다. 그런데 한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3의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에 의하면 간접외국납부세액의 공제는 손회사나 자회사의 지점까지만 가능하도록 돼 있으므로, 만약 '한국회사-Coop-BV-이라크 지점'의 회사 구조를 갖는 경우, 이라크 지점에서 낸 35%의 법인세에 대하여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물론 위와 같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명문의 규

38) the Parent-Subsidiary Directive를 일컫는다.

정에도 불구하고, 한국도 지주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인식하여 세금 신고를 하나로 할 수 있는 연결납세제도를 2010년부터 도입하고 있으므로 네덜란드 Coop-BV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인식하여, 이라크에서 내는 법인세도 간접외국 납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가능하다. 위 의견은 논리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그 인정의 필요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나, 법인세법 제76조의11과 법인세법 시행령 120조의15에서 연결납세를 내국 연결모법인과 내국 연결자법인 사이에만 가능한 것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 한국 과세당국이 전향적으로 앞의 의견과 같은 입장을 취하지 않는 한, 명문의 규정에 반하는 해석으로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입법론적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자회사 및 손회사 범위를 정함에 있어 해외 회사 설립지에서 인정하는 연결법인들은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인정하는 경우에 있어 하나의 회사로 인정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한편 위와 같은 국내 세법상의 난점에도 불구하고 Coop 제도의 활용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고 보는바, 해외에서 여러 사업이 동시에 이뤄지는 경우 각 사업단위로 BV를 설립하고 그 위에 지주회사로 Coop을 설립하면 그 효용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경우 한 곳의 BV에서 거둬들인 이익을 다른 BV를 설립하여 투자하거나 또 다른 BV의 손실을 보전하고 사업을 활성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경우 BV와 Coop 모두에게 그 어떤 명목의 세무상 부담이나 제한 없이 자유로운 자금 이동이 가능하므로, 진정한 의미의 지주회사로서 그 역할이 크다 할 것이고, 중국에는 세후 사업수익의 측면에서도 가장 유리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해외 자원개발 사업을 여러 곳에서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한국회사의 한해서는 Coop을 지주회사로 활용할 가치는 여전히 높다 할 수 있다.

6. 네덜란드 자회사의 자금조달 구조

6-1. 서설

앞의 논의를 종합하면, 하나의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한국회사-BV(자회사)-이라크 지점(또는 해외 손회사)의 회사구조가 유용함에 틀림없고, 만약 다수의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면 한국회사-Coop(지주자회사)-BV1/BV2/BV3...(손회사)-이라크 지점(또는 증손회사) 등의 회사구조가 훨씬 이익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위와 같은 회사구조를 선택하여 네덜란드에 BV를 설립하는 경우, 과연 한국회사에서 자회사에 어떤 형식으로 자금을 지급하는 것이 한국회사에 보다 유리한지 살펴보아

야할 것이다. 주식인수 대금 납입의 방식으로 이뤄지는 자기자본의 형식(equity financing)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대여금 지급 방식으로 이뤄지는 타인자본의 형식(debt financing)으로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어느 것으로 할 것인지 여부는 나중에 모회사인 한국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이나 이자를 받을 때 또는 자본 감소 등을 통해 주금액을 반환받거나 원금을 상환받을 때 어떤 형식이 세제상 이익에 되는가를 살펴보고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만약 대여금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때에는 과소자본제도로 인한 영향이 없는지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6-2. 자기자본의 금융방식의 경우

통상 네덜란드 BV의 자기자본(equity)은 주식액면금으로 이뤄지는 자본금(nominal share capital)과 '주주 출연의 임의적립금'(share premium)³⁹⁾으로 나뉜다. 만약 BV가 한국 모회사에 자본금을 환급하는 경우 사전 주주총회의 절차를 통해 승인이 이뤄지고 정관에 자본금 감소가 반영된다고 한다면, 자본금의 환급에 대하여는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주주 출연의 임의적립금 환급의 경우에도 그 환급으로 인하여 자본금과 법정준비금에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한 원천징수가 이뤄지지 아니 한다. 다만, 주주 출연의 임의적립금의 경우 회사의 수익행위와 관련될 때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주주 출연의 임의적립금을 우선 자본전입하고 그 이후 전입된 자본금을 모회사에 환급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원천징수를 피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 주주총회 및 자본감소 등의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 문제가 있다.

6-3. 타인자본의 금융방식의 경우

네덜란드에서 타인자본의 금융방식을 취할 경우 이전가격(transfer pricing)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막기 위해서는 한국 모회사가 네덜란드 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은 반드시 이라크 지점에 모두 송금하여 그곳에서 사용토록 해야 한다. 또한 네덜란드는 지주회사를 포함한 그룹집단에 속한 회사들에게 적용되는 과소자본세제(thin capitalization rules)에 의하면 대여금과 자기자본의 비율을 3: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위 비율을 초과하는 대여금의 이자에 대해서는 비용

39) 주주 출연의 임의적립금(Share premium)은 주주가 회사에 하는 비공식적인 자본출자에 해당하는데, 주주가 출자하면 share premium reserve라는 계정에 임의준비금으로 적립이 된다. 주주와 회사 간의 'Informal Capital Contribution Agreement' 등과 같은 임의계약에 의해 출자 규모나 시기 등이 결정되고, 그 출자로 인해 주식이 발행되지 않는다. 나중에 위 준비금을 자본전입을 절차로 통해 자본금화하면서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공제를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본고의 사례처럼 이라크 지점에 송금돼 그곳에서 사용하고 이자가 발생하는 거래구조에서는 과소자본세제의 인정 여부에 상관없이 네덜란드 내 과세효과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 이라크 내 법인소득의 산정 시에만 이자비용의 공제 여부가 문제될 뿐인데, 앞서 살펴본 이라크 원유가스 개발을 위한 서비스계약의 경우에는 법인세가 35%로 고정돼 있어 이자 비용 공제 여부가 아무런 세제 효과를 나타내지 않는다. 그런 관점에서는 적어도 이라크 내에서는 자기자본의 금융방식이든 타인자본 금융방식이든 아무런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6-4. 소결

결국 이라크 원유가스 개발사업에 투자하기 위한 한국회사의 네덜란드 자회사에 대한 금융구조는 타인자본의 금융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이 투자수익의 극대화라는 측면에서 보다 유리하다. 그러나 만약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Coop을 지주회사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배당에 대하여도 비과세되므로, 이 경우에는 자기자본의 금융방식이든 타인자본의 금융방식이든 원칙적으로 차이가 없다.

7. 결론

해외 자원개발 사업을 할 때, 법률적으로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수익성이 좋은 투자구조를 찾는 것은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 자원개발 사업에 있어 중요하다. 특히 법제도가 발달하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개발도상국에서 자원개발 사업을 할 때 더욱 신중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

자회사 설립은 모회사를 자회사의 사업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고, 자원개발로 인한 수익을 최대화하는 데 그 다음의 목적이 있으므로, 그 목적의 순서와 내용에 가장 부합한 국가에 최적의 회사 구조를 선택하여야 한다. 통상 자원을 보유한 개발도상국은 첫 번째 목적에 부합하는 회사 제도를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고, 회사 제도를 갖춘 경우에도 그 실효성을 담보할 다른 국내외적인 법제도가 불충분한 경우가 적지 않다. 물론 법제도가 완벽하다고 하여도 실제 이를 적용하여 운용하는 데 있어 문제가 있는지 여부도 살펴보아야 하는데, 법률 문화의 발전이 비교적 늦은 자원보유국에서 이런 기대를 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제반 조건을 갖춘 국가를 찾아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라크와 같이 정치, 경제적 상황이 불안정한 국가에 진입할 때는 더욱 위와 같은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인데, 그런 필요성을 염두에 두고 한국기업이 많이 진출

IV. 해외 자원개발을 위한 네덜란드 자회사의 설립구조 195

하고 있는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이라크 자원개발 사업의 위험성에 적합한 자회사 설립구조를 살펴보았다. 하나의 자원개발 사업을 벌이는 경우는 한국회사-네덜란드 BV 자회사-이라크 지점의 단순구조를 여러 자원개발 사업을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벌이는 경우는 한국회사-네덜란드 Coop자회사-BV 손회사-이라크 지점의 형태로 설립구조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3국의 국내외 법제도를 비교하여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자원개발에 따른 수입에 대해 자원보유국, 자회사 설립지 그리고 한국에 이르는 중첩적인 과세에 당면하여 어떤 회사조직을 선택하고 어떤 설립구조로 하는 것이 더 이익이 되는가는 자회사 설립 시 검토해야 할 또 다른 중요사항임을 보았다. 자원개발 사업으로 인한 세후 순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각 국가 내국법의 과세제도와 이를 조정하는 조세조약 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도 익히 살펴보았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해외 자원개발을 위한 자회사의 설립구조를 결정하는 데 많은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 중 하나를 간과하는 경우 잘못된 설립구조에 이를 수 있다. 그러니만큼 자회사 설립을 위한 구조 결정에 있어 많은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고, 관련 전문가들의 도움도 충분히 받아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따른 이익을 확대시키고 이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담보방안인 것이다.